

##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259호

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29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(안)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자녀를 출산하여 완화된 소득요건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가구가 재계약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소득에 관한 재계약 요건을 마련하는 한편, 영구·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요건이 되는 자산규정을 현행화 하는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출산가구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소득에 관한 재계약 기준 마련(안 별표 14)

자녀를 출산하여 완화된 요건으로 입주한 출산가구의 재계약 소득기준을 입주당시 적용된 소득요건의 150% 이하로 설정

나. 오기사항 현행화(안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, 안 별표 14)

1) 영구·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요건이 되는 자산에 관한 인용조항 정정

\* (既) 규칙 제13조제2항 → (改) 규칙 제13조제3항

## 2)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에 관한 재계약 요건중 입주자격 인용조항\* 및 소득기준\*\* 정정

\* (既) 규칙 제14조제5항 → (改) 규칙 제14조제3항

\*\* (既)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→ (改)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 
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 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공공주택정책과)로 제출하여  
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  
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
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

- 팩스 : 044-201-5663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『정책자료-법령정보-행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(044-201-4580, 044-201-453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